의 안 번호 1757

# 2020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**검 토 보 고 서**

#### 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5. 31.(월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5. 31.(월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6. 11.(금)

#### 2. 제안이유

○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및 「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8조에 따라 2020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에 대하여 중구의회의 의결 받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O 조성 총괄

(단위 : 원)

전년도말 조성액(가)	당해연도 증감액			당해연도말
	계 (나)=(다)-(라)	조성액(다)	사용액(라)	조성액 (마)=(가)+(나)
29,732,350	240,640	240,640	0	29,972,990

#### 4. 근거법규

가.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8조

나. 「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8조

#### **5. 검토의견** : 없음

(당해연도 증감액 240,640원 전년도말 조성액 정기예탁 이자수입)

## 근 거 법 규

###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-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 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  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  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-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 구청장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,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  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